

울산지방법원 2018. 5. 9 선고 2018가단695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9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. 12. 18. 접수 제976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상우

별지